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제3차 회의결과

(2025. 10. 27.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 개요

- (목적) 가상융합산업 관련 법제도 및 윤리원칙 현황과 발전방안 논의
- (일시/장소) '25. 10. 23(목), 오후3시~5시 /K-META 4층 회의실

□ 주요 내용

<주요내용(안)>

-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및 가상융합플랫폼 정의 등
- 가상융합(메타버스) 윤리원칙(실천윤리) 동향
- '25년 윤리제도분과 정책 건의

□ 참석자 산·학·연·관 전문가 19명(분과원 및 간사 16명/개방형 참여 3명)

구분		소속	성명	직급	비고
분과원	학계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분과장
		광운대학교	유지상	교수	
	산업계	글로브포인트	조상용	대표	온라인
		브이리스브이알	권종수	대표	
	연구계	저작권 위원회	김찬동	팀장	온라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신각	책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연구위원	발제자
유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혜경	사무관	온라인
		디지털리터러시협회	김묘은	대표	발제자
		메타버스기업지원센터	황철호	센터장	발제자
			이지연	대리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남지현	대리	
사무국		K-META 정책기획실	서영석	실장	
			이명진	부장	
			주정현	차장	
			이혜민	과장	
개방형 (온라인)		레이존	구형근	대표	
		국민연금공단	이정수	-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안현주	대리	

□ 주요 내용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신고 운영 효율화(메타버스기업지원센터 황철호 센터장)

구분	주요 내용
현안 및 법적 근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9조 (24년 8월 시행)에 따라 직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 대상이나, 현행법에 가상융합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기업 혼란 방지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실무적 정의 마련이 시급함
플랫폼 정의	정보통신망과 가상융합 기술 기반으로 사업자, 이용자, 기관 등이 상호작용, 협력, 가치 창출이 가능한 개방적/확장적 생태계로 정의 추진
적용 범위 및 분류	(적용 범위): 콘텐츠와 플랫폼 구분이 명확한 협의적 해석 (콘텐츠, 서비스를 매개하는 역할에 한정) 검토 중 (분류): 교육/학습, 의료/건강, 전시/홍보, 기업 업무, 산업 기술, 소셜 네트워크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신고 시 선택하도록 구상
신고 제도 운영	(신고 유형): 신규 신고 변경 신고 (향후 추가 검토) 신고 해지 (폐업 기준 미달 시) (절차): 사업자 신고서 제출 → 위탁기관 검토 → 신고 접수증 발급 * 미신고 시 패널티 없음, 현황 파악 목적
제도 개선 및 실익 강화 방안	(목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실익) 극대화 (추진 과제): 매출액 확인 기능 도입, 주기적 신고 환경 구축, 나라장터 업종 코드 연계 협의, 신고증을 전문 기업 증빙 자료로 활용
향후 계획	플랫폼 정의 및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해 회의 참석자 및 관계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연계 자료로 활용할 예정

○ 가상융합 기술 산업 및 기업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 실천윤리(CDL 김묘은 대표)

구분	주요 내용
시장 현황	(국내): 투자 실패 사례로 '메타버스는 죽었다'는 인식이 강함. (해외): 서서히 성장 추세, 특히 교육 및 산업용 메타버스 분야는 지속 확장 (기술 동향): 메타버스, AI, 데이터 3가지 기술이 융합되어 시너지 창출 및 발전 (콘텐츠 개발 장벽 하락): 생성형 AI 도입(예: 메타 호라이즌 월드)으로 공간 및 오브젝트 제작이 쉬워져 일반인도 콘텐츠 제작 가능성이 높아짐
기존 윤리 원칙의 한계	2022년 개발된 기존 메타버스 윤리 원칙은 인터넷 시행착오 방지 및 이용자 보호(B2C) 중심으로 개발되어 B2B 시장(산업용)에 적용하기 어려웠음

산업용 윤리 개발 방향	(목표): B2C 중심의 기존 윤리 원칙을 B2B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방법): 기존 3대 지향 가치와 8대 실천 원칙은 유지하되, 다양한 산업용 사례 조사 및 윤리적 이슈를 도출하여 기업 환경에 맞게 조항 및 용어 수정 (예: '~해야 한다' 대신 '**~노력한다**'로 변경)
산업용 윤리 및 체크리스트 구성	총칙 및 8대 실천 윤리 (24개 조항) 실천 윤리 체크리스트: 10개 문항으로 축소 개발 *규제 성격 최소화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적 사항만 포함 평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 가능
주요 윤리 조항 (기업 맞춤)	(진정성/투명성): 투명한 운영 원칙 및 책임 구조 마련 노력 *직원들이 지나치게 사실적인 가상 환경에 현실 혼동 문제 사례 발생 (호혜성): 기업의 저작권 등 상호 이익을 절충할 수 있도록 노력 (사생활 존중): 근무 외 시간 및 비업무 영역에서 직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감시나 정보 수집 행위 제한 (공정성): 데이터 소유권 및 사용 범위의 사전 명확화를 통한 분쟁 예방 노력 (책임성): 알고리즘 오류 점검 및 개선 체계 운영, 국제 협업 시 책임과 대응 절차 사전 협의, XR 장비 사용에 따른 건강 문제 정기 점검 등 포함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활용): 가상융합 산업 우수 기업 선발 기준 (장관상 등)으로 활용 예정 (기대 효과): 기업들이 사업 초기부터 윤리적 부분을 인지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향후 성장했을 때 윤리 문제가 아킬레스 건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토대 마련

○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연구위원)

구분	주요 내용
법 제정 현황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4년 12월 제정, 현재 시행령이 늦게 나와 입법 예고 단계로, 일부 국감 등에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 수렴으로 입법 예고가 지연되는 상황
AI 기본법의 특징 및 쟁점	(적용 기업 수): 현재 법의 영향력이 미치는 국내 기업은 3~4개에 불과할 정도로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임 (규율의 어려움): AI 서비스의 다양성(자율성, 적응성, 불투명성) 때문에 법률에서 명확한 규율이 어려움 (규제 방식): 인허가 방식이 아닌 사업자가 스스로 규제 대상을 판단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자율 규범 성격이 강함 (기술적 한계): 위험 관리 및 식별/개선 조치가 AI 기술의 블랙박스 영역 등으로 인해 기술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사업자 책임 모호): 법률에서 개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해석상 어려움이 많음

주요 용어 정의 (국내법)	(AI 시스템): 시스템 통제 및 추진 체계. 자율성, 적응성을 특성으로 주어진 목표를 위해 예측/추천/결정 등을 추론하는 시스템 (결과물): AI가 생성한 결과물 자체(예: AI 영상 콘텐츠)는 AI 제품으로 보지 않음 (AI 사업자): 개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포괄 (영향을 받는 자): 환자 등 권리/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에 한정
고영향 AI (규제 대상)	(정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시스템 (활용 영역): 의료, 채용·대출 심사 등 일부 영역 (실제 적용 범위): 전적으로 AI가 최종 판단까지 내리고 운영하는 시스템에 한정되므로, 실제 고영향에 해당되는 사례는 매우 적을 것으로 해석됨 (확인 제도): 고영향 여부가 모호할 경우 부처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예정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의무):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안전성/신뢰성 확보 위한 문서 작성/보관 등 (정보 공개 의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종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학습 데이터 개요 등의 설명 방안 수립 및 시행 (포괄적인 설명 방식 위주)
투명성 확보 의무	- 고지 (1항): 고영향 및 생성형 AI 사용 시 AI 기반 운영 사실을 사전 고지 (계약서, 이용 약관 등으로 가능) - 표시/워터마크 (2항):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 의무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허용) - 딥페이크 표시 (3항):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 (가시적 표시만 허용) - 예외: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여 전시·향유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표시 의무 적용 배제
해외 법 비교 (참고)	(EU AI Act): 모든 AI 에코시스템 사업자 대상 수평적 규제, 위험 기반 규제 차등 적용. TDM(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 옵트아웃 방식 인정 (미국)주법: 캘리포니아 등에서 개발 사업자에게 의무를 명확히 부여 (예: AI 디텍션 툴 무료 제공 의무), 텍스트 생성형 AI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제외 / 콜로라도주는 개발/이용 사업자 의무를 법률에서 명확히 분리